

수험표

시험명	제59회 SQL 개발자		
수험번호	059003022	시험구분	필기
종목명	SQL 개발자(SQLD)		
성명	김재록	생년월일	1986.06.24
시험일시	2025.11.16(일) 입실 08:30~09:30, 시험 10:0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30부터 입실 가능 및 09:30까지 입실 완료 · 09:30부터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본인 확인 등 실시 		
고사장소	SQLD (서울) 구산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서울 은평구 갈현로15길 20-23 구산중학교 <p>* 고사장은 원칙적으로 수험생 차량 주차가 불가하며, 주차 문제 발생 시 수험자 귀책으로 간주</p>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참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필기구(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검정색 볼펜) · 수험표 		

응시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는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10:00 이후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음**
2. 수험원서(접수신청서) 및 답안지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만 사용하며, 그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될 수 있음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시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필기시험 서술형 답안 정정은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줄(=)을 긋고 다시 작성
 - 필기시험은 **종료 5분 전까지 답안지 교체가 가능**
 - **답안지 기재 착오, 누락, 불완전한 답안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응시료는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
4.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인정 범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본인 확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응시자 적용】

○ 실물 신분증

-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아내인 것))
- 2)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4) 여권
- 5) 공무원증(장교 · 부사관 · 군무원 신분증 포함)
- 6) 장애인복지카드
- 7)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 8)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9)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모바일 신분증, 신분확인 서비스, 국가기술자격증

-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 2) 모바일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해당 앱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설치 가능))
- 3)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정부24, PASS 앱,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우리WON뱅킹 원더월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 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PASS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 5)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6) 정부24, PASS, 네이버, 카카오, 삼성월렛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 7)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체신분증 : 규정 신분증 발급에 불가제약이 있는 응시자에 한정 적용]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1)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 · 생년월일 · 성명 · 학교장 직인이 표기 · 날인된 것)
- 2) 재학증명서(NEL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 컬러) 발급, 사진 · 생년월일 · 성명 · 학교장 직인이 표기 · 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3)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 직인이 날인된 것)
- 4)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5)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 1)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 확인 · 직인이 날인된 것)

○ 외국인

- 1)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앱에 발급된 것)
- 2) 외국국적등록증(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인정
- 3) 영주증

[신분증 인정 기준]

- 1) 일체 훼손 · 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 · 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틸착 · 분리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 ·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2)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인정
- 3)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 하지 않음
(대학교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신용카드 등은 인정불가)

5. 필기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를 지참해야 함
6. 모든 전자통신기기의 전원은 종료해야 하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중에 기기에서 발생한 소음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됨
7. 시험 중 개인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 및 소지가 가능하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착용 및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됨
8.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음
9.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10. 시험 관련 아래의 부정행위를 한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되며, 앞으로 2년(시행기관 주관 민간자격) 또는 3년간(국가 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부정행위 기준]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또는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전자통신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선서 등 웨어러블기기, 태블릿, 휴대용 장치(컴퓨터, PDA, PMP, 카세트, 게임기 등),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전자식 표시기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위 유형과 유사한 그 밖의 전자통신기기
- 문제지 또는 답안지 등을 절취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11. 시험 관련 아래의 행위를 한때에는 퇴실 조치되어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 처리됨

[시험 중지 및 무효(퇴실조치) 기준]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모든 전자통신기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
- 고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 고사장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경우
-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한 시험 중지 및 무효,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고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 또는 응시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2.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일부 시험(시험시간이 3시간 이상 시험)만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가능함, 화장실 이용 시에는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나 시험과 관련된 어떠한 물품도 소지할 수 없으며, 이용 전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여 발견될 경우 시험 중지 및 무효 또는 부정행위 처리됨
13.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종목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14. 시험시간은 타종 또는 고사실 감독위원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끝남
15. 응시자는 정해진 시간(퇴실가능시간)이 지나면 퇴실할 수 있으나, 그전에 퇴실하면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16. 고사장의 책·걸상,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며, 음료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답안지 또는 시설물 등의 파손은 응시자의 귀책으로 시험의 0점 처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7. 시험정보(문제, 답안, 채점기준, 응시자의 답안지 등)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며, 시험문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갈 수 없음